

서울지방세무사회-세무정보(2022-12)

□ 12월의 세무일지

구 분	세 무 일 지
12월 12일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1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기한 ▪ 원천징수분 법인세·소득세·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 신고 납부 ▪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납부 ▪ 4대보험료 납부 ▪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 및 포기신고 ▪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
12월 15일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종합부동산세 납부 또는 신고납부 ▪ 고용·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
12월 26일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1월 폐업신고 사업자 확정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▪ 11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기한
2023년 1월 2일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등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신청 ▪ 11월 지급분 일용근로자(폐업자의 일용근로자 포함)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▪ 11월 지급분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▪ 2022년 10월 폐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(일용근로 제외)

□ 12월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달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

① 약정에 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회수여부

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약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 때에는 반드시 약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이 회수하여야 합니다.

약정일이 2021년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한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수하여야 합니다. 만약 미회수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귀속자에 대한 상여등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집니다.

② 건설업의 법정자본금 유지여부

㉠ 건설업의 경우 결산재무상태표상 자본이 건설업 면허와 관련된 법정자본금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. 만약 법정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12월 31일 전까지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법정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.

- ㉞ 결산재무상태표상 자본은 실질자산과 실질부채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부채 중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.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미계상된 경우 추후 건설업관련 법정자본금 충족여부를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㉟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결산재무상태표상 자본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.
- ㊱ 예금은 결산종료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으로 확인하며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분류하여 결산재무상태표상 자본을 계산할 때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.

□ **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와 관련하여 다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**

- ①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②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.
- ③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, 공제금액 11억원, 납세의무자의 연령별·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%까지 적용 가능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9월 30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5일까지 신청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④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(2023.6.15.)까지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.

납부할 세액	분납 가능 금액
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	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
500만원 초과	납부할 세액의 50% 이하 금액

[감수 : 서울지방세무사회 오의식 연수이사]

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김 완 일 올림